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 분석 및 대응





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요

개인정보 유출사고 분석

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

01 개인정보 유출이란?

개정 후

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, '24.1.4. 시행

☑ 개인정보의 분실・도난・유출(이하 "유출등"이라 한다)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・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.

개정 전

- ☑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<u>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</u>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1.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, 이동식 저장장치,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
 - 2.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
 - 3.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,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
 - 4.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



02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

개정 후

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, '23.9.15.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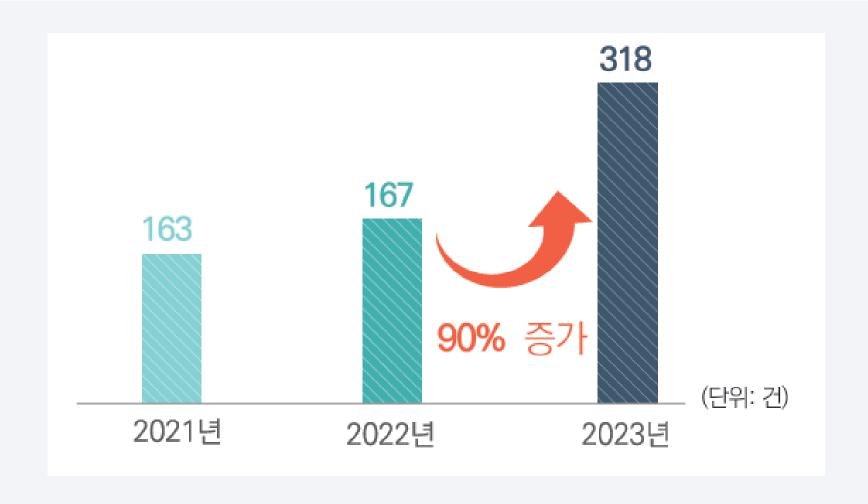
☑ 유출 통지

- (시점) **72시간 이내**
- * 다만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해소 후 통지 가능
- 1.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, 취약점 점검· 보완,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·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
- 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
- (규모) 1명 이상
- (방법)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
- * 다만,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

☑ 유출 신고

- (시점) **72시간 이내**
- *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
- * 다만,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·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
- (규모) 1천명 이상, 민감정보/고유식별정보 유출 등,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등
- (방법) 개인정보 포털(privacy.go.kr)에서 신고

03 개인정보 유출 신고 현황





04 개인정보 조사 및 처분 규정

개정 후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, '23.10.16. 시행

☑ 조사·처분 과정의 적법절차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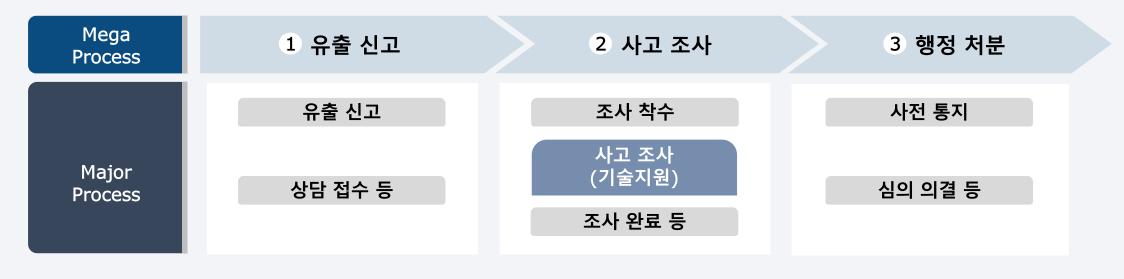
-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
-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
-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 등

☑ 업무 프로세스 및 체계 개선

-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(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 조사 착수, 조사기간 6~12개월 등)
-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였고, 소재불명,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를 신설
- 개인정보 침해를 선제적·예방적 점검할 수 있는 사전 실태점검(법 제63조의2) 세부 기준 마련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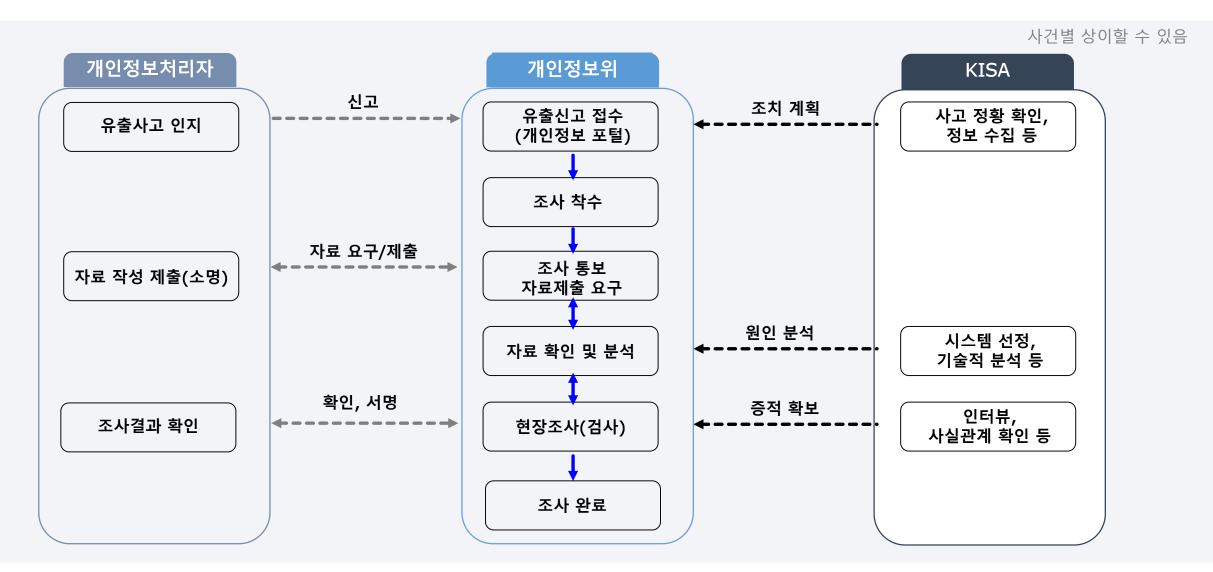
05 개인정보 유출사고 처리 절차

사건별 상이할 수 있음



- ☑ 개인정보처리자 : 개인정보 유출 신고
- ☑ 개인정보보호위원회: 개인정보 유출 신고 접수(KISA 공통), 사고 조사, 행정 처분 등
- ☑ KISA: 개인정보위의 사고조사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수행(법 63조)
 - 사고 경로 및 원인, 사고 규모 및 항목, 사고 대응 경위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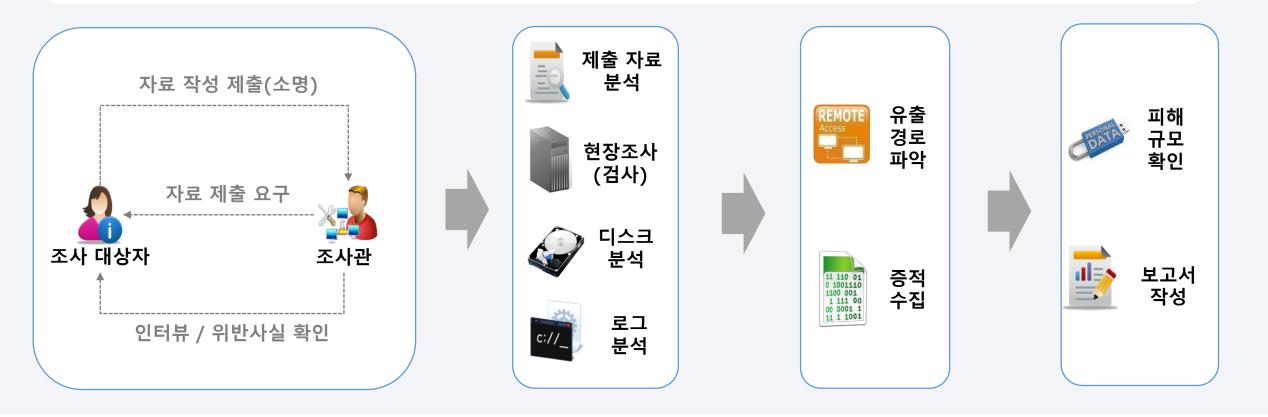
06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절차



07 개인정보 유출사고 분석 절차

사건별 상이할 수 있음

✓ 자료확보 → 제출자료·시스템·로그 등 분석 → 유출 경로·원인 확인 및 증거 자료 확보 → 피해규모·사실관계 확인 → 보고서 작성 등



08 개인정보 유출사고 분석 사례(관리적)



09 개인정보 유출사고 분석 사례(기술적)



10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조치

외부 공격

유출된 시스템 분리·차단 조치, 관련 로그 등 증거자료 확보, 유출 경로 및 원인 분석,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 변경 등 안전조치 강화, 시스템 개선 및 복구 등

시스템 오류

시스템 영향도 분석, 소스코드, API 설정 및 연동, 서버 설정 개선, 형상관리(기록, 보관) 등

검색 노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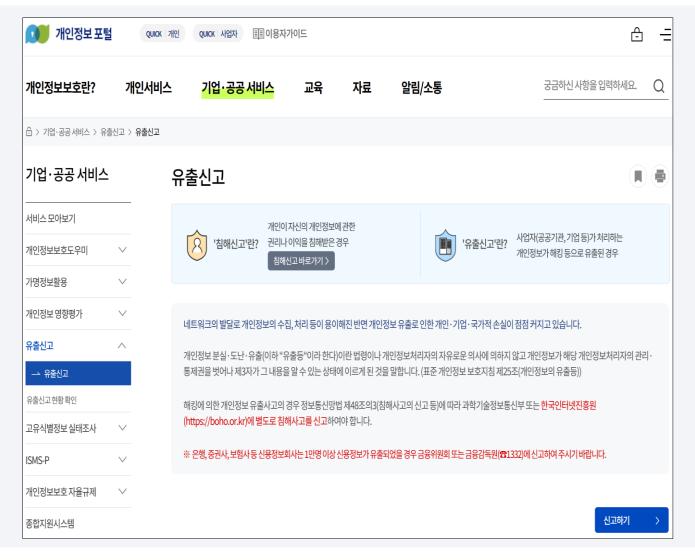
검색엔진에 **노출된 개인정보 삭제** 요청, 관리자 계정 **로그인 추가 인증, 소스코드** 점검 (개인정보 포함시 삭제), **웹페이지 전송방식** 확인(GET방식이 아닌 POST방식 사용) 등

11 개인정보 유출사고 통지 및 신고(1/2)

적용 대상		개인정보처리자	
적용 범위		개인정보 유출 등	
의무 사항		통지 및 신고	
벌칙 규정		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	
유출통지	규모	1명 이상	
	시점	72시간 이내	
	방법	홈페이지,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	
	항목		시점과 그 경위,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L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, I, 피해 신고·상담 부서 및 연락처 등
유출신고	규모	 1. 1천명 이상 2. 민감정보, 고유식별정보 유출 등 3.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등 	
	시점	72시간 이내	
	기관	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	원(KISA)



11 개인정보 유출사고 통지 및 신고(2/2)



대상	① 개인정보처리자	
신고기준	 ※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함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	
신고기한	72시간이내	
신고내용	1.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2.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과 규모 3. 유출등이 된 시점과 경위 4. 유출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·조치 및 결과 5.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6. 담당부서·담당자 및 연락처	
근거조항	 조항 개인정보보호법제34조	



12 개인정보 유출사고 안전조치 예시

기술적 안전조치 예시

01 | 파일 업로드 취약점 예방

- 웹서버 내 이용자가 첨부하는 파일의 확장자를 제한
- 첨부할 수 있는 파일의 최대 크기를 제한
- 사용자가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을 임의로 변경하여 저장
- 사용자·업로드 폴더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업로드 가능하도록 변경 등

02 | SQL 인젝션 취약점 예방

-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 특수 문자가 SQL 문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 적용
- 에러 메시지가 노출되지 않게 설정하거나 일반적인 오류 메시지만 표시하여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방지
- 사용자 입력 데이터 중, 특수 문자가 SQL 문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조치
- 웹 취약점 점검(연 1회 이상) 및 웹 에디터 등 게시판 도구 업데이트(상시)
- 웹 방화벽을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 실시 등

03 | 크리덴셜 스터핑 예방

- 서버 및 보안장비에 접속을 시도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접근 임계치를 설정 ※ (예시) 동일한 IP에서 O분간 ㅁㅁ회 이상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등
- 임계치를 초과하여 접속하는 경우 해당 IP에서 서버 접근을 일정 시간 차단하고, 보안 담당자에게 알림 기능 등 활성화
-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모니터링으로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 등을 탐지 및 차단 필요
-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 실패 시 로그인 절차에 추가적으로 2차 인증수단 또는 CAPTCHA 등을 추가하여 인증 강화 등
- ※ 이외에도 비인가 접근통제 강화, 접근권한 최소화 관리,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안전조치 필요

관리적 안전조치 예시

업무 과실 예방

- 다수의 수신자에게 메일 발송 시에는 '개별 발송' 또는 '숨은 참조' 기능을 활용하거나 발송 버튼 클릭 시 팝업 등으로 수신자 재 확인
- 구글, 네이버 폼 등 설문조사 서비스 이용 시 설문 참여자·편집자의 정보 공개범위를 '비공개(제한됨)'로 설정하는 등 공개범위 설정
-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외부 공개 시 개인정보를 '숨김'으로 처리하지 않고 삭제 후 게시
-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·감독 실시 등



13 개인정보 주요 안전조치



접근권한

- ☑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
- ☑ 인사이동 시 접근권한 변경, 말소
- ☑ 일정횟수 이상 인증 실패시 접근 제한 등



- ✓ IP 주소 등으로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탐지 및 대응
- ☑ 안전한 접속수단, 인증수단 적용
- ☑ 취약점 점검 등으로 취약점 제거 조치 등



암호화

- ☑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저장
- ☑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송신 등



접속기록

- ☑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
- ☑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 등



백신

- ☑ 백신 SW 등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, 운영
- ☑ 보안 업데이트 실시 등



감사합니다



